



제418회 국회 (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정범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대한 독립몰수 도입〉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67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정애 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18.
3. 회 부 일 : 2024. 7.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에 따르면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으로, 선고유예와 같이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으면서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예외를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주형(主刑)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몰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된 소위 ‘n번방’ 사건의 경우 SNS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를 일일이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최근 관련자들이 수사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행위자의 사망이나 불특정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므로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관하여는 「형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독립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행위자의 사망, 불특정, 소재불명 또는 공소시효의 완성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몰수·추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0조의2(몰수 등의 특례) 「형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몰수 및 추징은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거나 행위자의 사망, 불특정, 소재불명 또는 공소시효의 완성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선고할 수 있다.</u>
<u>제10조의2(추징 집행의 특례) (생략)</u>	<u>제10조의3(추징 집행의 특례) (현행 제10조의2와 같음)</u>
<u>제10조의3(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 (생략)</u>	<u>제10조의4(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 (현행 제10조의3과 같음)</u>
<u>제10조의4(범죄수익등의 추정) (생략)</u>	<u>제10조의5(범죄수익등의 추정) (현행 제10조의4와 같음)</u>

□ 현행 형법 제49조는 몰수를 다른 형벌에 부가하여 가함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공소 제기를 전제하지 않는 독립몰수제도는 인정하지 아니하되, 선고유예 등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 몰수의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몰수의 부가성으로 인하여 범인의 사망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이 몰수되지 못하고 상속인이나 다른 공범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범죄수익의 박탈과 재범방지라는 몰수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지 못한다는 형사정책적 문제가 발생해 왔다는 지적이 있음.

□ 개정안은 ‘행위자의 사망, 소재불명, 공소시효의 완성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몰수는 대물적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형사제재이므로 공소제기와 처벌을 반드시 전제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독립몰수제도 도입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개정안은 범죄행위에 대한 실체법상 불법성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존재하나 형사절차상 공소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실질적 또는 형식적으로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장래에 대한 범죄예방이나 범죄로 취득한 이익의 박탈이라는 관점에서 몰수가

필요하다는 형사정책적인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따른 독립몰수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에서는 독립몰수제도의 근거와 사유를 예시하고 있을 뿐, 어떠한 절차에 따라 독립몰수를 청구하고 재판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특례법의 제·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¹⁾,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독립몰수 관련 절차법의 제·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법 시행일을 일정기간 유예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둘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²⁾ 등의 몰수 특례법은

1) 이러한 절차규정에는 제3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독일의 형사소송법을 참고하여 제3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신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독일 형사소송법은 몰수에 관한 재판 시 일정 사실이 소명된 때 몰수의 영향을 받는 제3자로 하여금 몰수와 관계된 절차에 참여할 것을 명하도록 하고(제431조), 소송준비절차에서 몰수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며(제432조), 그 밖에 공판절차에서의 몰수관계인의 지위(제433조), 몰수관계인의 대리인 선임(제434조), 공판기일 통지(제435조), 공판절차(제436조)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2) 「공무원몰수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고지) 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때 이 법에 따라 피고인 외의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재산이나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재산을 가진 자나 그 재산상에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피고인 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係屬) 중인 법원

2.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명 및 피고인의 성명

(이하 생략)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3조(고지) 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피고인 외의 자의 재산이나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재산을 가진 자나 그 재산상에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피고인 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係屬) 중인 법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몰수가 공소 제기를 필요로 함을 전제로 조문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개별법상 몰수 규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독립몰수제도를 도입할 경우 관련 조문들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개정안은 독립몰수가 가능한 요건으로 ①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거나 ② 행위자의 사망, 불특정, 소재불명 또는 공소시효의 완성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②)는 포괄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 개정안의 법문언에 따르면 기소유예, 무혐의, 무죄, 공소권 없음 등 모든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대해서 독립몰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됨
- 무혐의 또는 무죄는 행위자의 피의사실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로, 이에 대해서도 독립몰수를 적용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2.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명 및 피고인의 성명
(이하 생략)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고지) 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외의 자(「정치자금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이 된 정당·후원회 또는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재산 또는 지상권·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의 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위 재산을 가진 자 또는 그 재산 위에 지상권·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피고인 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이 된 정당·후원회 또는 법인·단체의 경우 제1호·제2호 또는 제7호의 사항에 대한 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2.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명 및 피고인의 성명
- (이하 생략)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독립몰수는
현행법의 몰수·추징의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활용
하도록 그 사유를 명확하게 열거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외국 입법례³⁾를 살펴보면, 영미법계의 민사몰수나 독일법의
독립몰수⁴⁾는 실체법적 근거 등 제도의 차이는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유죄판결에 기초하지 않은 몰수”의 형태를 인정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몰수를 민사적 몰수(civil forfeiture)와 형사적 몰수
(criminal forfeiture)로 나누고, 민사적 몰수는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벌금부과 없이 불법 또는 범죄로 발생하였다는 개연성이
있는 재산을 박탈하는 제도임.⁵⁾

○ 독일은 형법에서 독립몰수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절차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와 사인소추인이 특정인에 대한 형사소추의
관할권을 가진 법원 또는 몰수대상 목적물 보관소재지 법원에
목적물을 적시하고 몰수 근거 사실을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⁶⁾

3) 조서연, “범죄수익 몰수·추징제도의 현황 및 입법과제”, 현안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17, p.21~33, 참조하여 재구성.

4) 독일 형법에서 독립몰수는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기타 법률상의 이유에 의하여 특정인에 대한 형사소추가 불가능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 “법률상의 이유”란 사면, 행위무능력, 기타 절차적 장애사유 등으로 해석하고 있음(조서연, 앞의 보고서, p.35 참조).

5) 현재, 미국 이외에도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그리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아일랜드 등이 민사몰수제도를 도입하고 있음(김혜경, 전제 논문, p.76 참조).

6) 독일의 독립몰수 제도는 ‘물건’에 대한 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유죄판결에 기초하지 않은 몰수의 일종이기는 하나, 소추 가능한 최소한의 실체법적 근거는 존재하여야 하므로 영미법의 민사몰수제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름(조서연, 앞의 보고서, p.36).

문 의 처

02)6788-5073